

부산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단3447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서재옥, 이석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설승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대원, 권태하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1.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가 2019. 6. 25.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9. 6. 25. 접수 제 276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8. 10. 19. 10: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창고 앞길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잡순쇄함몰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38348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1. 12. 'C는 원고에게 70,586,451원과 이에 대한 2018. 10. 19.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9. 6. 25. 접수 제27685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2019. 6.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C의 형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당시 시가 250,000,000원 정도로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채권최고액 180,950,000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60,765,568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C는 채무가 261,352,019원(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70,586,451원 + F에 대한 채무 160,765,568원 + 피고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으로 그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시가 250,000,000원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이던 C가 채권자 중의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일응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C의 원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던 2019. 6. 11. 당시 C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사무실 직원인 G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C가 원고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7. 12.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그러자 위 변호사는 2019. 7. 16. C의 친구 H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H은 같은 날 그 중 21,000,000원을 C의 처 I에게 송금한 사실, I은 2019. 7. 1. J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등의 소매업을 개업하고 H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을 위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 원고는 2019. 11.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2019카단54431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9. 11. 15.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의 C에 대한 구체적인 채권금액은 본안소송인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38342 사건에서 신체감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C의 채무초과사실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선의의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59.3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2801㎡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801분의 56,3992

- 이 상 -

